

## 전기 통신 사업 분류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신 민 수\*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Framework on Electron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Classification

Minsoo Shin\*

## 요 약

최근 들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사업 분류 체계에 포획되지 않고 있어 권리와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공백은 관련 사업자들 간의 갈등을 발생시켜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있음은 물론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업 분류 체계의 최종적인 목표는 수평적 업무 체계이나, 수평적 업무 체계로 개편되기까지는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인 수평적 업무 체계로 개편되기 전에 현재의 사업 분류 체계가 어떠한 분류 체계의 진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적합할 것인지를 실증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Key Words** : Telecommunications services classification, Evolution of regulatory framework

## ABSTRACT

Recently many players offering new types of ICT services are making an entrance into market. The problem is that these players are not included in the current electron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classification on the relevant law. Thus vacuum of regulation and obligation duty has arisen. This sort of vacuum of regulation and obligation duty is precipitating conflict among ICT players leading to the decrease of economic effectiveness in market as well as playing as causes to hinder sustainable ICT industry development. The last goal of electron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classification is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However it will take a very time to be transformed to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Thus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volution steps of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before the final transformation to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 I. 서 론

최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네트워크의 광대역화·All-IP가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통합망에서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통신서비스들 간 융합을 통해 업무의 구분을 넘어 경쟁구도가 형성되었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신규 서비스가 개발됨에 따

라 기존의 서비스가 대체되는 등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는 갈수록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또한 각 영역의 경계에 해당하는 대체와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 규제체계와 마찰을 일으키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산업 발전의 지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융합화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계층별 통합하고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 (ORCID:0000-0002-4787-8828)Hanyang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minsooshin@hanyang.ac.kr, 정희원

논문번호 : 201807-C-200-RN. Received July 3, 2018; Revised August 23, 2018; Accepted August 23, 2018

등 규제 프레임워크의 정비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sup>11</sup>. 이에 우리나라 역시 통신망과 서비스의 진화 방향에 맞추어 정책 및 규제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업무 분류 및 진입제도의 개편을 위하여 통신사업 업무 및 사업자 분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수직적, 수평적 규제체계

수직적 규제체계의 구조는 특정 네트워크와 전송기술에 서비스가 종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sup>2</sup>. 그러나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융합이 활성화됨에 따라 수직적 규제체계와 마찰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sup>3,4</sup>.

이에 대해 수평적 규제체계를 주장하는 Sicker(2002)와 Werbach(2002) 등에 따르면, 수직적 규제모델은 상호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네트워크 간의 융합을 반영하지 못하며, 서비스와 콘텐츠의 차별, 시장 왜곡과 투자 왜곡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sup>5,6</sup>. 또 다른 연구자들은 수직적 규제체계가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면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sup>4,7,8</sup>. 이러한 연구에 따라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수평적 규제체계란 기능에 따라 전송, 플랫폼, 콘텐츠 등의 계층으로 분류하고 각 계층 내에는 동일한 규제를, 계층 간에는 분리된 규제를 적용하는 규제체계를 의미한다<sup>2,4,9,10</sup>. 수평적 규제체계 하에서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결합 운영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더라도 규제의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sup>2</sup>에서 규제 차별/중복/공백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sup>13</sup>, 이를 통해 규제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투자 의지를 활성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으로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sup>2</sup>.

### 2.2 통신업무 및 사업자 분류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상우 외(2005)와 오용수 외(2006) 등은 융합환경에 적합한 규제체계의 수립을 위해 투명성, 객관성, 비차별성,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간소화 및 최소화를 지향한 유럽의 규제 조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1,13</sup>. 김현경(2006)과 오승환(2006) 등은 융합의 흐름에 적합한 서비스 분류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서비스의 융복합화에 따른 규제기구 간 조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sup>12,14</sup>. 김형찬 외(2009), 이상우 외(2007)와 차성민(2010) 등은 기존에 별개로 취급되던 이종 업무와 시장 간의 경계에서 벗어나 시장 간 교차진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신규·융합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4,15</sup>. 박동욱(2010)과 강재원(2013) 등은 동일한 계층에 속하는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sup>11,19</sup>. 성동규 외(2011)와 이중화 외(2011)는 통신시장에 대한 탈규제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sup>17,18</sup>. 김정환 외(2014)와 김창완 외(2013)는 수평적 규제체계로 변환을 위해 점진적인 개편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통신사업자의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sup>12,20</sup>.

선행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통신 업무체계에서의 정책목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신 업무체계 개선방안을 재정리하면 이용자 편익 증진, 규제 측면의 효과성 증대, 인프라 고도화로 정리해볼 수 있다(그림 1).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모든 요소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기존 선행연구들의 경우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 머물러 있어 단기적으로 정책 실현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정책 대상자들의 순응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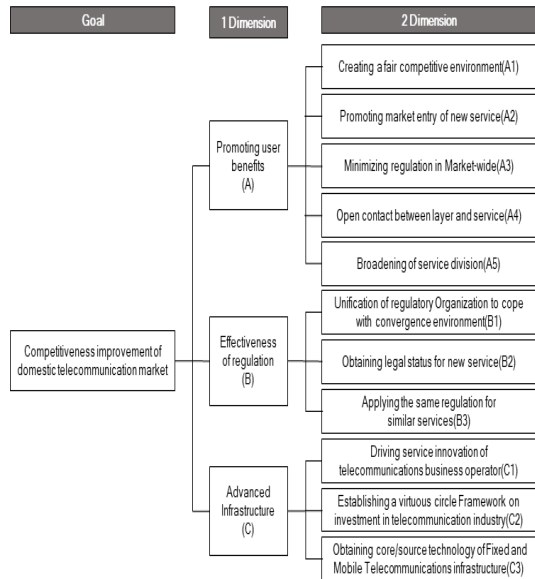


그림 1. AHP 모형  
Fig. 1. AHP model

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III. 연구모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은 계량적 접근이 어려운 분야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의사결정자의 판단과 경험을 조직화 및 구조화, 체계화하여 평가요소의 가중치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단계에서 수학적 모형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의사결정 기법이다<sup>[21,22]</sup>. 본 연구에서는 AHP분석을 통하여 통신 업무체계 개선 방안의 정책 목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통신업무 및 사업자 분류 체계에 대한 대안을 도출한다.

#### 3.1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융합 환경에 대응하여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통신업무체계를 개선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정책 목표를 세분화하였다.

디멘전1은 정책 목표의 대분류로 이용자 편익 증진, 규제 측면의 효과성 증대, 인프라 고도화로 나누었다. 디멘전2는 디멘전1의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서 이용자 편익 증진 영역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신규 서비스의 시장진입 촉진과 시장 전반의 규제 최소화, 계층 및 서비스 간 점점 개방, 업무구분의 광역화로 구성하였다. 또 규제 측면의 효과성 증진 영역은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기구 일원화와 신규 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 확보, 유사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 적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고도화 영역은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혁신 유도와 통신산업 내 투자 선순환 구조 확립, 유·무선 통신 인프라에서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로 구성하였다.

#### 3.2 통신 업무 및 사업자 분류체계 개선 대안

통신업무를 재분류하기 위하여 업무 구분방법은 기존의 기간(Common Carrier), 별정(Special Carrier), 부가통신(Value Added Carrier)업무를 현재와 같이 세 가지 업무로 규정하는 방법부터, 부분적인 통합 또는 전체를 통합하는 하는 등의 경우를 고려하여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제시하는 업무구분방법으로는 현행 통신법상 업무 분류와 유사하게 기간통신업무, 별정통신업무 혹은 기간유사통신업무, 부가통신업무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분류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기존의 업무 분류와 동일하게 구분하되 규제

표 1. 업무 구분을 위한 조합

Table. 1. Combination for Classification of communications operators

Alternative	Combination
Category 1	① Common carrier, ② Special Carrier, ③ Value Added Carrier
Category 2	① Common carrier, ② Special Carrier + Value Added Carrier
Category 3	① Common carrier + Special Carrier, ② Special Carrier + Value Added Carrier
Category 4	① Common carrier + Special Carrier, ② Value Added Carrier
Category 5	① Common carrier + Special Carrier + Value Added Carrier

의 강도를 달리하거나 제공하는 업무가 유사한 사업자 간 일부 통합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별정 및 부가통신업무를 통합하여 단일 업무로 분류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간통신업무와 별정통신업무, 그리고 별정통신업무와 부가통신업무를 통합하는 것으로, 별정통신업무에 해당하는 부분 중 기간통신업무와 유사하거나 또는 부가통신업무와 유사한 부분을 각각 기간통신업무와 부가통신업무로 통합하는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기간통신업무와 별정통신업무를 통합하여 단일 업무로 분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 업무(기간, 별정, 부가) 모두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업무, 별정통신업무, 부가통신업무를 모두 통합하여 단일 업무로 분류하는 것이다.

### IV. 분석

#### 4.1 정책 목표 우선순위 분석

AHP 분석을 위해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통신 및 방송, 콘텐츠 사업자, 방송통신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49부이며, 이 중 답변에 결측치가 있거나 일관성지수(Consistency Ratio)가 0.15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하여 총 46부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18명, 30대 이상 28명, 소속별로는 기업 36명, 연구소 및 협회 10명이며, 경력별로는 4년 이하 3명, 5년 이상 43명으로서 이 중 26명이 과장급 이상이였다.

통신 업무체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정책 목표(디

멘전 1)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로는 인프라 고도화, 이용자 편익 증진, 규제 측면의 효과성 증진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프라 고도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 이 둘 간 가중치에 있어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점에서 인프라 고도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 모두 중요하나 전문가들은 인프라 고도화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와 관련하여 각 영역에 포함되는 개선 방안(디멘전 2)들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로는 이용자 편익 증진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시장 전반의 규제 최소화, 신규 서비스의 시장 진입 촉진, 계층 및 서비스 간 접점 개방, 역무 구분 광역화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 측면의 효과성 증진 측면에서 유사 서비스에 대해 동일 규제 적용, 규제기구 일원화, 신규 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 확보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고도화 측면에서는 통신산업 내 투자 선순환 구조 확립과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혁신 유도, 유·무선 통신 인프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종합 AHP 분석결과 - 1차 설문  
Table. 2. Total ahp result - the first questionnaire survey

1 DIMENSION			2 DIMENSION			Total		
Item	Weight	Rank	Item	Weight	Rank	Item	Weight	Rank
A	0.397	2	A1	0.271	1	A*A1	0.108	3
			A2	0.178	3	A*A2	0.070	8
			A3	0.219	2	A*A3	0.087	5
			A4	0.173	4	A*A4	0.068	9
			A5	0.157	5	A*A5	0.062	10
B	0.196	3	B1	0.362	2	B*B1	0.071	7
			B2	0.265	3	B*B2	0.052	11
			B3	0.371	1	B*B3	0.073	6
C	0.405	1	C1	0.361	2	C*C1	0.146	2
			C2	0.385	1	C*C2	0.156	1
			C3	0.253	3	C*C3	0.102	4

#### 4.2 통신 역무 및 사업자 분류체계 개선 대안에 대한 분석

대안 분석을 위해 통신관련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2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2차 설문은 1차 설문에서 고려한 11가지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평가기준으로 놓고,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신역무분류의 통합 정도(표 1)간의 쌍대비교를 묻는 설문을 진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49부이며, 이 중

표 3. 종합 AHP 분석결과 - 2차 설문  
Table. 3. Total AHP result - the second questionnaire survey

	Total		Companies		Research institutions	
	Sum	Rank	Sum	Rank	Sum	Rank
Category 1	0.154	5	0.164	4	0.153	5
Category 2	0.171	4	0.156	5	0.174	4
Category 3	0.189	3	0.181	3	0.191	2
Category 4	0.195	2	0.232	2	0.187	3
Category 5	0.288	1	0.265	1	0.293	1

답변에 결측치가 있거나 일관성지수(Consistency Ratio)가 0.15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하여 총 3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1명, 30대 이상 38명, 소속별로는 기업 32명, 연구소 및 협회 7명이며, 경력별로는 4년 이하 2명, 5년 이상 37명으로 이 중 36명이 과장급 이상이었다.

해당 항목들의 전체 가중치의 경우 2차 설문과 1차 설문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각 평가기준 별 우선순위를 산출하기 위하여 설문 대상의 전체의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먼저, 첫 번째 설문 결과에 따르면 카테고리 5번 ‘세 가지 역무 통합’의 가중치가 전체 통신역무분류 방안 중 0.288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 가지 역무 모두를 통합하는 것은 결국 수평적 규제체제로 완전히 전환되었을 때의 방안을 의미하나 현행 수직적 규제체제에서 수평적 규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각 역무 간의 통합, 방송법과 통신법의 통합 등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역무 모두를 통합하는 카테고리(Category 5)를 제외한 나머지

표 4. 전체 가중치 산출 순위  
Table. 4. Ranking of weight(total)

	A1	A2	A3	A4	A5	B1	
Category1	0.023	0.015	0.018	0.014	0.013	0.015	
Category2	0.026	0.017	0.021	0.017	0.015	0.017	
Category3	0.030	0.020	0.024	0.019	0.018	0.020	
Category4	0.029	0.019	0.023	0.018	0.017	0.019	
	B2	B3	C1	C2	C3	Sum	Rank
Category1	0.011	0.015	0.031	0.033	0.022	0.210	4
Category2	0.013	0.018	0.035	0.038	0.025	0.242	3
Category3	0.015	0.021	0.041	0.044	0.029	0.281	1
Category4	0.014	0.020	0.039	0.042	0.027	0.267	2

표 5. 평가 기준에 따른 정성평가 합계 점수\*  
Table. 5. Total score on qualitative evaluation based on evaluation standard\*

Category	Alternative	Explanation	Standard score(10)										
			1	2	3	4	5	6	7	8	9	10	11
1	1	Common carrier(R), Special Carrier(R), Part of Value Added Carrier(R)	7	10	6				10		8	10	
	2	Common carrier(R), Special Carrier(R)+ Part of Value Added Carrier(S), Value Added Carrier(I)	8	10	6	6			10	10	8	10	
2	3	Common carrier(R), Special Carrier(R) + Value Added Carrier(S)	8	10	6	6		10	10	10	10	10	
3	4	Common carrier(R)+Part of Special Carrier(I), Part of Special Carrier(I)+Part of Value Added Carrier(S)	6	10	6	10		10	10	10	10	10	
4	5	Common carrier(R)+Special Carrier(S), Value Added Carrier(I)	6	10	3	6			10	10	6	10	
	6	Common carrier(R)+Special Carrier(I), Value Added Carrier(I)	6	10	6	6			10	10	8	10	
	7	Common carrier(R)+Special Carrier(I), Value Added Carrier 1(S), Value Added Carrier 2(I),	10	10	3	10	10		10	10	6	10	
5	8	Common carrier(R)+Special Carrier(I)+ Value Added Carrier(S)	6	10	3	10	10	10	10	10	6	10	
	9	Common carrier(R)+Special Carrier(R)+ Value Added Carrier(I)	6	10	6	10	10	10	10	10	8	10	

\* R(Relaxation): This means the relaxation of current regulation level for a service  
S(Strengthening): This means the strengthening of current regulation level for a service  
I(Invariance): This means the keeping current regulation level for a service

에 대해서 가중치를 재계산하였다. 재계산 결과 기간·별정 및 별정·부가의 통합, 기간·별정의 통합, 별정·부가의 통합, 세 가지 역무로 구분(기간·별정·부가) 순으로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표 6. 평가 기준의 가중치를 고려한 최종 점수  
Table. 6. Total score of considering the weight of evaluation criteria

Category	Alternative	Total score	Rank
1	1	5.247	9
	2	6.499	6
2	3	7.506	3
3	4	7.566	2
4	5	5.729	8
	6	6.283	7
	7	7.063	5
5	8	7.345	4
	9	7.899	1

### V. 결 론

분석에서 제시된 각 대안의 가중치와 평가기준(디멘전 2)에 대한 정성평가를 종합하여 평가기준의 가중

치를 고려한 종합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평가 항목의 경우 각 평가를 위한 지표의 충족하는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점을 책정하였으며, 각 평가지표의 점수는 10점을 만점으로 지정하였다. 각각의 배점은 평가 지표 중 통신사업자별 배점이 분배되는 항목을 평가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30%), 별정통신사업자(30%), 부가통신사업자(30%)로 구분하여 각각 부분적 기준 충족 시 해당 점수를 합산하여 합계점수를 부여하였고, 전체사업자 모두 설정된 기준 충족 시 10%를 추가로 가산하여 전체 점수(100%)를 산정하였다. 또한, 사업자별 구분이 관계없는 평가지표의 경우 공통항목(100%)으로 산정하였다.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고려한 종합평가를 제안하기 위하여 정성적 점수부여 방법을 대안 1부터 대안 9까지의 개별점수를 표 5와 같이 산정하였다.

평가 기준의 경우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11가지의 정책적 목표를 토대로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으므로, 각 평가기준의 가중치는 1차 설문에서 산출된 11가지의 Total 가중치 수치(표 4)를 적용하였다. 대안 1의 합계 점수를 예로 들면,  $0.10802*7 + 0.07079*10 + 0.08711*6 + 0.05230*10 + 0.14652*8 + 0.15655*10 = 5.24742$ 로 산출된다. 평가 기준에 따른 정성평가 산출 점수(표 5)와 각 평가 기준 11가지의

표 7. 평가 기준의 가중치를 고려한 최종 점수 (카테고리5 제외)  
Table. 7. Total score of considering the weight of evaluation criteria(except for Category 5)

Category	Alternative	Total		Companies		Research institutions	
		Score	Rank	Score	Rank	Score	Rank
1	1	1.107	7	0.817	7	1.148	7
	2	1.364	6	1.010	6	1.422	6
2	3	2.108	2	2.138	5	2.114	1
3	4	2.158	1	2.836	1	1.982	2
4	5	1.757	5	2.314	4	1.612	5
	6	1.924	3	2.534	2	1.768	3
	7	1.893	4	2.479	3	1.739	4

가중치(표 2)를 고려한 최종 대안 점수는 표 6과 같다. 가중치를 곱하여 환산된 합계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10점에 가까울수록 평가 기준에 더 적합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신 역무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고려해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위의 다섯 가지(카테고리)이며, 이들에 대해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점수의 합계의 1순위는 대안 9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가지 역무 모두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현행 역무체계에서 세 가지 역무를 모두 통합하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수평적 규제체계의 방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세 가지 역무 모두를 통합하기 이전에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카테고리 5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경우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하면 표 7과 같다.

먼저, 카테고리 5번(세 가지 역무 모두 통합)을 제외하여 분석한 결과로 전체 39부 설문자의 최종 결과는 대안3(기간+별정 일부, 별정 일부+부가 일부)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는 정성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표 4)와 같은 우선순위이며 이로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간통신역무와 별정통신역무의 통합보다 통합의 정도가 조금 더 진행된 역무통합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성적 평가기준을 반영한 종합적 결과를 고려하면 현재의 3구분의 역무구분은 2가지로 통합하는 것이 정책대상자의 전반적인 의견이며 앞으로 별정의 일부분을 나누어 기간과 부가에 포함시키는 방법과 기간은 그대로 두고 별정과 부가를 통합하는 두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정책담당자와 정책대상자의 관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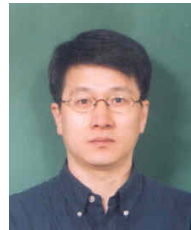
차이가 많이 좁혀지기는 했으나 그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고, 향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 뿐만 아니라 정책대상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T. W. Park, "Classification and licensing regulation o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in convergence era," *J. Law & Econ. Regulation*, vol. 3, no. 2, pp. 102-122, 2010.
- [2] J. H. Kim, J. E. Park, S. W. Kim, and S. C. Kim, "The transition to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the public's perspective," *Int. Telecommun. Policy Rev.*, vol. 21, no. 1, pp. 85-108, 2014.
- [3] J. W. Choi, "The horizontal regulatory model and the public sector broadcasting in the era of the convergence of broadcast and communications,"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vol. 4, no. 1, pp. 27-54, 2010.
- [4] KISDI,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under the convergence environment of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2007.
- [5] D. Sicker and J. Mindel, "Refinements of a layered model for telecommunications policy," *J. Telecommun. & High Technol. Law*, vol. 1, no. 1, pp. 69-97, 2002.
- [6] K. Werbach, "A layered model for Internet policy," *J. Telecommun. & High Technol. Law*, vol. 1, no. 1, pp. 37-68, 2002.
- [7] S. K. Choi, "Regulatory policy of convergent media - focusing on network and service regulation," *J. Broadcasting Res.*, no. 68, pp. 49-85, 2009.
- [8] W. J. Choi, "The function and its limit of terrestrial broadcasting under the regulation of horizontal system," *Commun. & Law*, vol. 10, no. 1, pp. 63-98, 2011.
- [9] S. K. Rhee, "Layers division for horizontal regulation," *J. Cyber Commun. Academic Soc.*, no. 24, pp. 313-344, 2007.

- [10] D. H. Kim, "Issues of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applicable for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t. Telecommun. Policy Rev.*, vol. 14, no. 1, pp. 19-43, 2007.
- [11] KISDI, *Network contents regulation of convergence environment -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EU(I)*, 2005.
- [12] H. K. Kim, "Response status and challenges of overseas legal system for digital convergence," *Ubiquitous Soc. Res. Series*, no. 15, 2006.
- [13] Y. S. Oh and H. Y. Jung, "The regulatory framework shift policy under the convergence," *J. Broadcasting and Telecommun. Res.*, no. 26, pp. 137-169, 2006.
- [14]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omparative study on the reform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in the U.S., Japan, and Germany*, 2006.
- [15] KISDI, *Study on the paradigm of communication market activation and competition promotion policy in response to convergence progress*, 2009.
- [16] S. M. Cha, "Regulation of communications operator in the convergence age - focusing on equity between common carrier and service-based carrier," *IT & Law Research*, vol. 4, pp. 117-142, 2010.
- [17]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The study on the policy making try to enhance the user benefit in smart environment*, 2011.
- [18]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Interconnection policies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smart phone environments*, 2011.
- [19] J. W. Kang, "A study on validity of the application of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 focusing on OTT(Over-The-Top)," *J. Broadcasting and Telecommun. Res.*, pp. 85-114, 2013.
- [20]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Network management policy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ecosystem under the CPND Structure*, 2013.
- [21] T. L. Saaty and L. G. Vargas, *Models, Methods,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Kluwer Academic Publishers, Norwell, 2001.
- [22] T. L. Saaty, "How to make a decisi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Eur. J. Operation Res.*, vol. 48, no. 1, pp. 9-26, 1990.

신 민 수 (Minsoo Shin)



Cambridge University, 경영정보시스템전공, 박사

Ma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Business School 교수

East Anglia University, Business School, 교수

현재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관심분야> 디지털컨버전스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 정보통신전략 및 서비스 모델, 인터넷 산업 분석